

1. 개정이유

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807호, 2023. 10. 31. 공포, 2024. 5. 1. 시행)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「해양수산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통·폐합하는 내용으로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」이 개정되었으며,

별지 서식 상의 생년월일은 신청인을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(의결 2020. 9. 23)에 따라,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처리절차 중 심의·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변경(안 별지 제1호, 제8호 및 제10호서식)
- 나. 신청의 주체가 법인·단체로 한정되는 경우, 신청서 서식에서 필수적 식별정보가 아닌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입란 삭제(안 별지 제1호 및 제5호서식)
- 다. 개인 또는 법인·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관련, 신청인이 법인·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안내문구 추가(안 별지 8호서식)
- 라. 신청서 서식 상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함에 따라, 지정서·

인증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발급하는 서식의 대표자의 생년월일 기재란 삭제(안 별지 제2호, 제3호, 제6호 및 제9호서식)

- 마. 법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양교육전담기관 지정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 처리절차 중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·확인 등의 주체로 해양교육센터 추가(안 별지 제5호, 제8호 및 제10호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개정 별지 서식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,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] 해양교육센터 지정 신청서
[] 지역해양교육센터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9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	대표자(성명)	전화번호	팩스번호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해양교육센터·[]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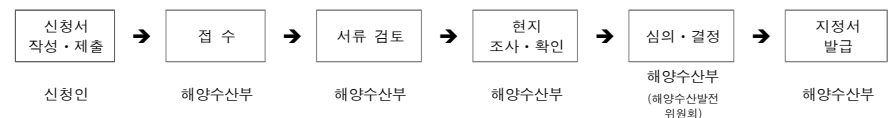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. 재정계획서 3.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. 시설·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해양교육센터 지정서
지역해양교육센터

지정번호	제 호		
기관(단체)명		지정유형	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대표자(성명)			
주소 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	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(단체)을 해양교육센터
·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
다.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라.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
-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[] 시정 [] 운영정지 명령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제 호		
처분 대상자	지정번호	지정유형
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(성명)	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전화번호

위반사항	
------	--

처분기간	시정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	운영정지 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처분사항	
------	--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90일
기관(단체)명		사업자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	
신청인	대표자(성명)	전화번호	팩스번호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	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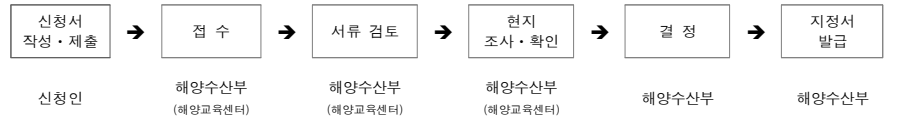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. 재정계획서 3. 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. 시설·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

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

지정번호	제 호
기관(단체)명	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대표자(성명)	
주소 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(단체)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나.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- 다.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
 - 라.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
 - 마.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-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해양교육프로그램 []인증
[]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9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전화번호
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팩스번호
	※ 신청인이 법인·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기재하지 않음	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
해양교육 프로그램 개요	프로그램명			
	교육대상		교육인원	명
	교육시간	계	강의	실습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프로그램의 [] 인증 · []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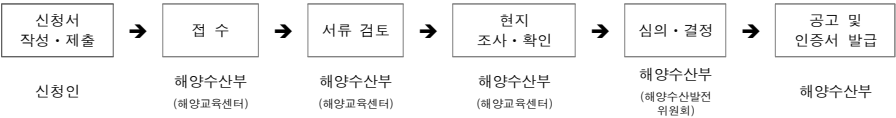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서

인증번호	제 호
프로그램명	
성명 (법인·단체의 명칭)	
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주소	
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나.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- 다.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
 - 라.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인증변경 신청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
 - 나. 단순한 착오, 오기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
-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2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인증을 받지 않은 해양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전화번호
	프로그램명	인증번호
	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
신청내용	변경사유	
	변경내용	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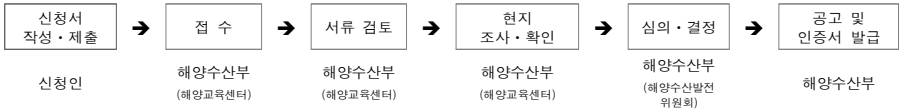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해양교육프로그램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